

1. 개정이유

병 복무환경 변화에 따라 경계전담부대(격오지)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진급 비율을 확대하고, 병 복무간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 기간 확대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임.

2. 주요내용

가. 경계전담부대(격오지) 진급 비율 확대(안 제32조 제4항)

* 전투부대 모범병의 조기진급 비율은 10분의 2로 적용되나, 경계전담부대(격오지) 근무 유도 및 동기부여를 위해 진급 비율을 10분의 3으로 확대

나.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 진급 제한 기간 확대(안 제36조 제2항)

*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자에 대한 진급 제한기간을 유죄판결 및 징계 유형에 따라 1~3개월 차등 적용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중 “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”을 “경계전담부대(격오지)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3(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), 전투부대는 총 진급인원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개월의”를 “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금고형 집행유예 : 3개월

나.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: 2개월

제36조제2항제2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강등, 군기교육 : 3개월

나. 감봉, 휴가단축 : 2개월

다. 근신, 견책 : 1개월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2조(병의 진급 등) ① ~ ③ (생략)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<u>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(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)까지 진급시킬 수 있다.</u>	제32조(병의 진급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<u>경계전담부대(격오지)는 총 진급인원의 10분의 3(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), 전투부대는 총 진급인원-----.</u>
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 ① (생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<u>1개월의</u>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. 1.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2.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③ (생략)	제36조(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</u> -----. 1. ----- <u>가. 금고형 집행유예 : 3개월</u> <u>나.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: 2개월</u> 2. ----- <u>가. 강등, 군기교육 : 3개월</u> <u>나. 감봉, 휴가단축 : 2개월</u> <u>다. 근신, 견책 : 1개월</u> ③ (현행과 같음)